

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8. 11. 4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'98. 11. 4.

다. 상정일자 : '98. 11. 11.

(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배병선

나. 제정사유

-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, 규제의 신설,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며,
- 환경, 보건, 안정등 삶의 질에 대한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임.

다. 주요내용

■ 기능(안 제2조)

-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- 규제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-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
-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규제 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
■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되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.
-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.

■ 회의(안 제5조)

-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③항의 후속조치로써,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규제 개혁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.
- 『제2의 건국』의 7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율적 시장 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에도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
- 정부차원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판론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"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"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기존규제의 심사,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규제의 신설·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
3. 규제의 등록·공표에 관한 사항
4.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5.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6.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.
-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-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의회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·과·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(관계전문가 포함)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- ② 간사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.

제7조(규제신고센터의 설치)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